

바지락

 전국금속노동조합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노조법 2, 3조
제대로 개정합시다.



권고사직, 희망퇴직? 슬기롭게 대처합시다!

근로기준법은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나 징계, 인사발령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나 징계, 인사발령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노동자가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사직은 노동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퇴직을 하는 것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사직의 유형으로는 개인적인 사유의 사직, 권고사직,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당하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노동자가 회사의 사직 요청에 따라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사직을 강요해 힘들게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부당해고의 법적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두로 해고를 해놓고, 노동자가 부당해고 문제를 제기하면 그때 가서 권고사직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관두라’고 할 때 무작정 ‘알겠다’고 하면 안됩니다.

사직서는 절대로 쓰지 마십시오

회사를 관둘 마음이 없다면 절대로 사직서를 써서는 안 됩니다. 사직서를 쓰면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수급 등의 권리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또, 해고를 당해서 관두는데, 사직서를 내야 퇴직금을 줄 수 있다거나 실업급여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 거짓입니다. 퇴직금은 해고나 사직이냐에 상관없이 퇴사하면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사직서를 내면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되어 오히려 받지 못할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부당한 징계·해고·인사발령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부당한 해고(징계, 인사발령 등)를 당했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민사소송보다는 신속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고일이나 징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료들과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안심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무료노동상담, ☎ 1811-9509**로 연락주세요.

Q 사직을 철회할 수 있나요?

A 보통 사직은 노동자의 일방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예 : 2024. 12. 1.자로 사직하겠습니다)으로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직하고자 하니 승인해달라’와 같이 사직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이라면, 사직서를 수리(승인)하기 전까지는 사직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Q 명예퇴직을 거부했더니 물류창고 관리로 발령을 냈습니다. 물류창고에는 빈 책상 2개가 전부이고, 인터넷이나 전화도 없이 온종일 책상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A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들에게 모욕을 줘서 퇴사시키려는 뜻이겠죠.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니와 임금 삭감도 있다면 생활상 불이익도 있으므로 부당한 인사발령입니다.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신고하여 신속한 조사와 보호 조치를 요구하십시오. 또한 불법행위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금속노조 '동부산지회 인터뷰'

이번호에서는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는 금속노조 동부산지회 박병호 지회장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지회장님 반갑습니다. 최근에 동부산 작업복세탁소 수요조사 중간보고회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작업복세탁소에 대한 동부산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의견은 어땠나요?



작업복 오염이 심하고, 이로 인해 본인과 가족의 건강과 위생 걱정이 많이 된다는 의견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세탁한다고 답변한 비율이 80% 이상인데, 그 이유는 회사에서 세탁해주지 않거나, 사업장에 세탁기가 없거나, 있어도 세탁 건조 환경이 미비하고 시간상 힘든 조건 등 때문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세탁하곤 있는데, 오염물질이 가족들의 옷에 이염되는 것에 대한 우려, 이로 인해 가사 노동이 더 늘어나는 점, 가정용 세탁기의 미흡한 세탁력, 세탁기 잦은 고장, 세탁 부대비용 증가 등의 고충을 호소했습니다.

그렇군요. 산단 노동자 의견을 들어보니 정말 작업복세탁소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70% 이상이 공동세탁소가 필요하다고 답변했고, 60% 이상이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혼 생산직 노동자의 경우는 그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작업복세탁소가 생긴다면 바라는 적정 사용료나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조사했는데요. 세탁 요금은 1벌당 1,000원이 적정하고, 작업복 세탁소에서 수거에서 배달까지 전담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노동자 부담 최소화, 세탁질이 공동세탁소 이용시 중요한 판단 요소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 더욱 산업단지 공동작업복세탁소가 동부산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산양산지부 동부산지회에서는 작업복세탁소 설치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2022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한 게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호응이 좋았어요. 서명운동, 선전물 배포,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많은 노동자, 시민이 관심을 갖는 사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언론보도, 기자회견, 캠페인을 진행하며 지역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저희 동부산지회 모든 조합원이 참여하여 선전전도 하고 집회도 열었습니다. 보수언론에서는 노동조합은 자신들에게만 해당되는 요구를 한다고 떠들어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을 하고싶어도 하지 못하는 산업단지 노동자들, 그리고 그 가족이 있는 지역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산시가 수요조사를 진행한 만큼, 7월 하순경 예정된 최종보고회와 후속 조치를 지켜보며 작업복세탁소가 꼭 설치되도록 긴장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확인한만큼, 조합원들의 열의도 높습니다. 여차하면 파업프로그램 일환으로 부산시청 앞 전 조합원 집회를 하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많은 시민, 노동자분들의 참여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동부산에도 산업단지 작업복세탁소가 설립되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부산지회, 파이팅입니다!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노조법 2, 3조 제대로 개정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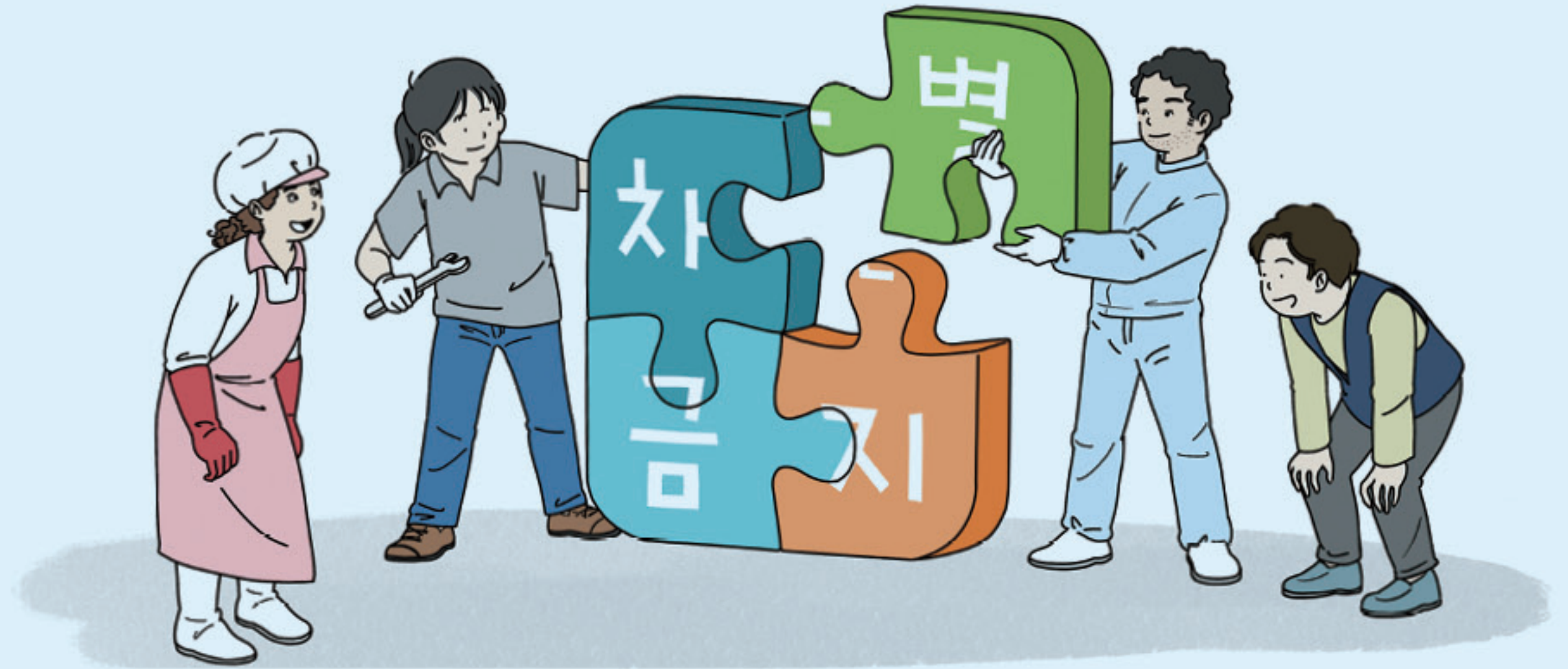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고 배우지만 일터에서 노동자와 사업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를 좌우할 수 있는 사업주 앞에서 노동자 개인이 자신의 요구와 권리를 당당히 이야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동자는 더 적은 돈을 받고 더 오래 일을 해야만 합니다. 위험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에겐 노동조합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당연한만큼, 노동3권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사업주, 자본가에게 많은 권력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가 노동조합으로 단결해야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0년 전에 머물러있는 노조법, 개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줄여서 '노조법')입니다. 문제는 노조법이 생긴지 70년간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법에서 정의한 기존의 노동자, 사용자 개념으로는 포괄하지 못하는 노동자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노동조합을 할 수 없는 노동자, 노동조합을 해도 실질적으로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하기 어려운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배달음식을 시키면 만나는 배달노동자를 비롯해서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프리랜서노동자 등은 노동자임에도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노동자로서 권리를 법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사업자단체'로 취급하며 사업주가 교섭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하청에 또 하청을 주고 파견 노동자를 대거 도입하며 실제로는 사용자인데도 하청업체나 파견업체에 사용자의 의무를 전가합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를 비롯한 많은 사고가 하청노동자나 파견노동자에게 발생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원청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합니다. 그만큼 일터는 더욱 위험해지고 열악해집니다. 이런 책임 회피를 막기 위해서라도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노조법 3조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경우를 좁게 정의한 탓에 실제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남발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노조법 3조가 개정되어야 노동3권을 보다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금속노조가 앞장섭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노조법 2, 3조 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또한 입법 과정에서 개정안의 문구가 수정되며 본 취지가 퇴색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속노조는 노조법 2, 3조의 '제대로 된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설문조사에서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80% 전후입니다. 그럼에도 노동조합 가입율은 13% 수준에 불과합니다. 즉,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노동조합을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더 많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할 수 있도록 금속노조가 앞장서겠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무료노동상담, 노조가입상담은 ☎ 1811-95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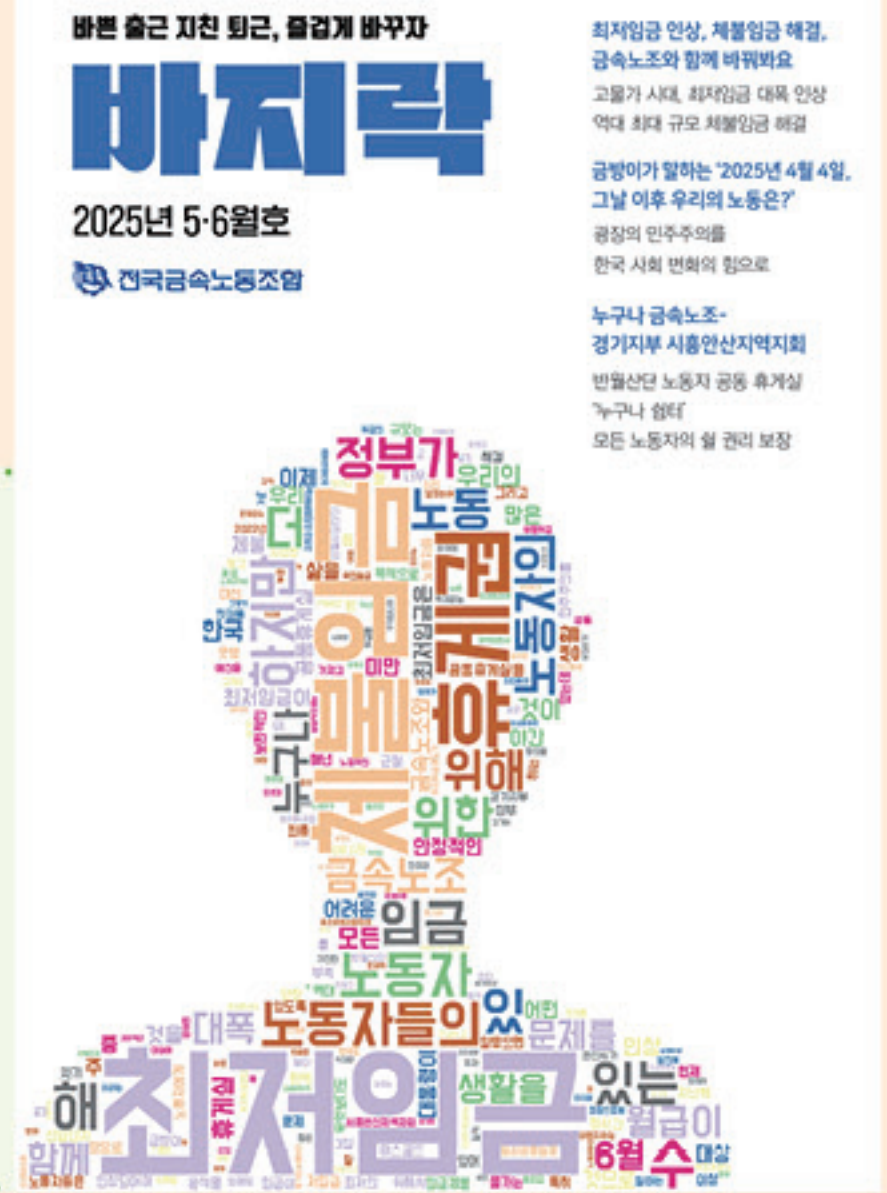
스마트폰 더욱
스마트하게 쓰는 법

QR코드를스마트폰 카메라로 찰칵!



공단노동자신문 <바지락> 지난 호 보기 QR

꿀팁. <바지락>을 모바일로 볼 수 있다는 사실.
알아두면 유익한 실전 노동법과 다양한 정보.
지난 내용이 궁금하다면, 찰칵!



민주노총 노동상담페이지 QR

전국 어디서나 무료 노동상담 전화 1811-9509
온라인으로 노동 상담받고 싶다면? 찰칵! 누구나 쉽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나와 우리의 일터를 바꾸고, 삶과 미래를 바꾸는 가장 큰 힘, 노동조합

무료 노동·법률상담, 가입문의  1811-9509

✓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산업단지 만들기에 함께합시다!

노동자 없이는 회사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단지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주거, 교통, 문화, 환경 등의 개선은 더디기만 합니다. 산업단지 정책에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금속노조는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산업단지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산업단지 정책 설문조사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정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산업단지 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등을 조사합니다.

산업단지 정책 설문조사를 위한 QR 리플렛을 받으신다면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 바지락에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노동자의 든든한 벗, 금속노조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 임금체불 · 부당해고 · 직장갑질 · 산재사고

무료 노동 상담 · 가입 문의  1811-9509